

신현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7-318호(2017.12.26.)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8번지 일원 신현초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 신현초교주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018년 1월 2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■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내용

1. 명칭: 신현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
2. 사업구분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3. 사업시행예정위치: 인천광역시 서구 288번지 일원
4. 추진위원회승인일: 2009. 9. 11.
5. 정비구역 지정 해제일: 2017. 12. 26.
6. 추진위원회승인취소일: 2018. 1. 2.